

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

신청인	성명(법인명)	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상 호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(영업소)			
	전화번호	(휴대전화:)	전자우편주소	
수입신고번호 (제조신고번호)			수입신고일 (제조신고일)	
담보종류		현금 [], 지급보증증서 [], 기타()		

자동차세 납세담보면제확인(이 확인서에 의한 통관 허용량)

통관세관명 (세무서명)						
구 분	품 명	수 량 (리터)	교통·에너지·환경세		자동차세	
			세율	세 액	세율	세 액
납세담보 면제대상 유류반출	계					
	휘발유					
	경 유					
	기 타					

본 납세담보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까지 입니다.

「지방세법」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를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

직인

※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적힌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합니다.